

제 27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9.12.)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
2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거창군 농촌인력증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5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7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1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2.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 8. 24.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고독사 예방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6. 13.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과 1인 가구가 아니라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사업
2.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2.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권해도]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위임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1)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원중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정산서
4. 지출결의서
5. 방법일지
6.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2.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동복]

가. 제안이유

-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부담 기준을 강화하고 물품 운영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사 운영비 정비(안 제48조)
 - 1) 원칙: 사용자부담(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포함)
 - 2) 예외적으로 예산지출: 보수비,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주택관리비
- 물품의 구분 정비(안 제55조, 별표 3)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물품 관리기준 변경사항 반영

- 가) 소모품 기준에 취득단가 변경: 1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나) 용어 및 문장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조례는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을 강화하고 물품 운영 기준을 상위법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
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3. 화재보험료 등 주택관리비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의 종류·상태의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제55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가. 비소모품

- 1)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2)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나. 소모품

-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나.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다.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2.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 제안이유

-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신규모집 공고 선정 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탁 명 :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위 치

┌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 위탁사무

- 1)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관리

- ▶ 권역별 노선 지정으로 출·퇴근 차량 운행
- ▶ 현장실습교육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 교육 진행
- 2)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3)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 4)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등 지원사업
- 5) 그 밖에 거창군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예산은 매년 편성(2023년 예산 : 150백만원)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농업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을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은 농작업자 출퇴근 운송, 농번기 인력수급, 농작업 교육 등 효율적인 인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 소 년 활 동 시 설 민 간 위 탁 동 의 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2.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위 치 :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시설개요

구 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3901.43㎡	지상2층 / 898.12㎡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9동 / 386.02㎡

구 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9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인관, 안내데스크, 휴게실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탐험관, 교육체험실	
	3층	전시실	옥상	천체관측관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일까지(3년간)

다. 위탁사무 및 조건

구 분	위탁사무 및 조건	비 고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시설의 개보수 중 거창군에서 심사결정한 사항 지원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거창국민여가캠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캠핑장 사용료는 거창군에 납부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운영비 282,000천원(4D 영상관 임대비 등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 지방세법에 따른 대부료 징수/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수탁자 자격사항

-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 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등 3개소임.
- 청소년수련원과 우주창의과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캠핑장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으로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2.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동복]

①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1. 제안이유

- 출산·육아·복지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 커뮤니티센터 등을 포함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신축부지 조성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일원
- 사 업 명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3. 9. ~ 2025. 12. (2년 4개월)
- 사 업 비 : 30,672백만원
 - 용역비 1,800, 부지매입비 15,100, 공사비 13,772
 - 기확보 4,300백만원(용역비 1,300, 부지매입비 3,000)

○ 사업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 부지조성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개과/300병상/응급의료센터 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자동실
- 행복맘커뮤니티센터 건립 : 영아·임산부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행복나눔과) : 육아정보나눔터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80필지, 96,638㎡(29,232평)

다. 추진경과

- 2019. 11. 11. :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결정
- 2021. 7. 16.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 2022. 10. 4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의체 회의(1차)
- 2022. 11. 9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의체 회의(2차)
- 2023. 1. 13.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보고회
- 2023. 3. 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교환 협약 체결
- 2023. 4.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의결
- 2023. 4. : 제1회 추경 예산 43억원 확보
- 2023. 5. 8.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 기본계획 용역
- 2023. 6. 19.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의체 회의(3차)
- 2023. 7. 12.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손실보상 지원 용역

라. 향후계획

- 2023. 8.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 2023. 9. : 제2차 추경 부지매입비 추가 편성 및 토지 매입
- 2023. 9.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 2024.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2024. 11. ~ 2025. 5. : 실시계획인가 및 기본/실시설계
- 2025. 6. ~ 12. : 부지조성공사 시행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 조성으로 군민 대상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기대
- 의료·복지·생활편의 등 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시가지 조성 기반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 책임의료 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을 포함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시급한 응급의료 확충과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12.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1. 제안이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시설 : 거창시니어클럽
- 시설기준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 1실 이상
 -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 1개 이상
 - 시설의 규모 : 연면적 100㎡이상(사무실 및 사업장 등)

○ 필요인력 : 5명 이상(기관장 1, 상근 직원 4명 이상)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소요예산 : 330,000천원(2023년 기준)

※ 거창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거창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 참여 지원사업 추진 가능

다.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항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등
-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9. 3. 20.(5년)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라. 향후 추진일정(안)

○ 2023. 10. :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11.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2023. 12. : 심사결정 및 통지(고득점자 선정)
- 2023. 12. :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 체결
- 2024. 3. : 위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과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교육훈련 등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사업으로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